
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FAQ(1차)

【주요 건의사항 관련】

Q-1

(지원규모) 단 3개 플랫폼이 대규모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는 체계는 예산의 불용 우려와 함께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. 더 많은 지역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?

A-1

- 교육부는 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, 의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
- 올해는 3개 플랫폼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, 올해 선정된 지역에서 도출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확대를 추진할 것임

Q-2

(복수형 범위) 광역시 단일형 참여의 경우 사업 수월성 확보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인근 광역시도의 전체 참여보다 인근 시의 대학 참여하는 형태는 어떤지?

A-2

- 본 사업은 대학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 인근 광역시도의 참여는 배제한 채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만 참여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

Q-3

(플랫폼 형태) 지자체와 총괄대학의 예산체계가 달라 총괄대학교부 방식은 혁신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, 교육부 산하 회계시스템 표준화가 이루어진 비영리 재단을 통해 지원예산 교부하는 것은 어떤지?

A-3

-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, '20년은 총괄대학교로 사업비를 우선 교부할 예정임
- 다만, 플랫폼을 법인화하여 법인에 지원예산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, 지역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'21년부터 플랫폼 법인을 운영할 수 있음
 - 지역에서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 설립된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 가능함

Q-4

(계속사업 여부) 시범사업 종료 후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인지?

A-4

- '21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
- 나아가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에 이 사업 플랫폼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임

Q-5

(대학 구조개혁 여부) 이번 사업이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?

A-5

- 하향식(Top-down)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내 대학의 역할을 지역 거버넌스 하에서 구체화하여 특성화할 수 있는 길을 상향식(Bottom-up)으로 모색하길 기대
※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대학은 이 플랫폼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
- 이처럼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 내 대학이 그에 따른 대학 자체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흐름임

Q-6

(대학의 범위) 본교는 수도권에 있고 캠퍼스가 지방에 있는 경우 해당 캠퍼스가 지방대학으로 인정받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?

A-6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은 분교와 달리 '캠퍼스'의 경우 위치변경인가 및 분·본교 통폐합으로 설치
- 캠퍼스는 분교와 달리 별도 증원 없이 하나의 대학에서 정원을 분리·배치하는 것에 그치므로, 지방 대학으로 볼 수 없음

【참고】 분교와 캠퍼스 비교표 및 리스트

	분교	캠퍼스
법적 근거	●고등교육법 제24조, 대학설립운영규정(대통령령) 제2조 4항 ●교지, 교사, 교원, 수익용 기본 재산 모두 충족 필요	●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조(대학의 위치변경인가신청) ●교지, 교사 확보 필요
설치 재원 운영	●법인회계 ●회계 분리 운영 가능	●교비회계(일부 법인회계) ●회계 분리 운영 가능
학생 정원	●설치 시 교육부 인가	●본교에서 정원 일부 이전

Q-7	(지방비 매칭범위) 이 사업은 지역 내 고등학교도 참여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?
A-7	○ 대응투자액 30%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며 그 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역 내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음 ※ 다만 교육비 특별회계의 사용은 교육청 관할 분야에 한정되어야함
Q-8	(지방비 매칭비율) 지자체의 '20년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대응 투자 부담이 크고 지자체별 재정여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대응투자 비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
A-8	○ 대응투자 비율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조정은 어려움 ○ 이 사업에서 지자체는 대학 등과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이므로 매칭비 투자를 '대학'에 대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'지역'의 성과를 위한 투자로 보는 것이 적절함 ○ 다만, 대응투자 규모 자체가 작지 않다는 것에 동감하며, 현장에서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마련하겠음
Q-9	(사업비 집행기준) ○ 적어도 대응투자금에 대해서라도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재원을 직접 지원·투입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건의 ○ 기존 인력에게 사업 기여도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건의
A-9	○ '대학 외 기관'도 협업과제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○ 본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가능 ※ 성과급 지급 관련 기준을 포함한 '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'의 내용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

Q-10	(사업비 집행기준) 총괄대학의 세입회계 편성 시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’에 대해 대응투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
A-10	○ 총사업비는 총괄대학이 총괄 관리하며,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본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○ 다만, 사업비를 지역의 필요에 따라 최대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’의 내용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, – 지역에서는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’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것임
Q-11	(사업비 집행기준) ○ 기존 지자체별 지역산업 지원프로그램(인력양성, R&D 등)의 자율성을 인정하여,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 ○ 예를 들어 대구경북 HuStar프로젝트에서 혁신대학(대학 재학생 대상)과 혁신아카데미(대학 졸업생 대상) 추진 중 ○ 대학 졸업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 건의
A-11	○ 기존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본 사업의 방향과 부합한다면 지역에서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연계·추진할 수 있음

【사업 추진 관련】

Q-12	(시도지역혁신협의회 심의가 필수인지 여부) 지역혁신 플랫폼이 추진하는 모든 사항을 시·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지?
A-12	아님.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시·도 발전전략 또는 시책과 연계된 안건은 ‘ 시도지역혁신협의회 ’ 의 심의를 먼저 거친 후 ‘ 지역협업위원회 ’ 에서 심의·의결
Q-13	(총괄대학의 역할) 총괄대학이 총괄 역할만 하고 특정 핵심분야에서 중심대학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?
A-13	아님. 총괄대학은 중심대학 중 1개교가 대학부문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, 중심대학으로서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함
Q-14	(참여 대학의 범위) 과제 수행 시 가능한 한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?
A-14	아님. 참여 대학의 규모는 지역 내 협의를 거쳐 정할 사항으로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은 바람직하나,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며 나눠먹기식, 니열식 참여 및 과제추진은 가장 지양해야 할 형태임
Q-15	(도-도 간 통합 가능 여부) 복수형 플랫폼 구축 시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 외에 도 간 통합도 가능한지?
A-15	아님. ‘ 도 ’ 와,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으며 생활권을 같이하는 ‘ 광역시 ’ 간 통합 및 하나의 도에서 분리되어 나온 ‘ 광역시 간 ’ 통합은 가능하나, ‘ 도와 도 ’ 간 통합은 제한
Q-16	(소과제는 연계가 필수인지) 소과제 설정 시 사업 간 연계과제만 추진해야 하는지?
A-16	아님. 사업간 연계과제를 포함하여 핵심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단독과제, 협업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음

Q-17	(연계 가능한 사업 범위) 연계 가능한 사업 목록을 제시하였는데,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연계과제를 발굴해야 하는지?
A-17	제시된 사업은 연계가능한 사업의 예시 이며, 그 외 지역 내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음
Q-18	(대학교육혁신 참여대학의 범위) 대학교육혁신도 추진해야 하는 대학의 범위는?
A-18	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 지율개선대학 또는 역량강화대학 으로서 ‘ 핵심 분야별 과제 ’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학교육혁신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, 사업에 참여하는 그 외 고등교육법 상 대학과 타 법률 상 고등교육기관도 필요시 대학교육혁신에 참여 가능
Q-19	(복수형의 핵심분야) 복수형의 경우 참여하는 각 지역(지자체)별로 핵심분야들을 선정하면 되는지
A-19	아님. 핵심분야는 해당 플랫폼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부합해야 하며, 나아가 분야 간 연계도 고려해야 함 ※ ‘가’ 지자체와 ‘나’ 지자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플랫폼에서 선정되는 핵심 분야 A 는 ‘가’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뿐 아니라, ‘나’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과도 방향성이 부합해야 함
Q-20	(센터장) 센터장을 겸임직으로 해도 되는지?
A-20	아님. 센터장은 전담직임 ※ 대학교육혁신본부장, 핵심분야별 팀장의 경우는 지역 자율사항
Q-21	(센터장 임명)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 센터장을 임명해야 하는지?
A-21	아님.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, 지역협업위원회가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임